

#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7
----------	-----

제출년월일 : 2020.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규정에 대하여 상위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에 맞추어 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령에 맞춰 인용 법령명 및 조문 변경 등 조례 전체 내용 정비

- 1) 상위 법령인 「소비자기본법」 명시(안 제1조)
- 2)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도록 정의(안 제2조)

나. 「소비자기본법」과 중첩되는 조항 삭제 및 준용 조항 신설

- 1) 소비자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의 등록,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 「소비자기본법」과 중첩되는 조항 삭제
- 2) 일반적인 규정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직접 적용토록 준용 조항 신설 (안 제22조)

다.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없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 삭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9. 7. ~ 2020. 9.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11302, 2020.09.14.)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기획실-11302, 2020.09.14.)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복지과-52227, 2020.09.03.)

##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평창군 소비자보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익과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또는 농·축산, 어업 활동을 포함한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위한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

**제4조(위해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

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 교육 등)**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급)** ① 군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장 부당거래의 방지**

**제9조(부당거래의 조사)** 군수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거래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판매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誤認)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경솔, 무경험, 절박한 사정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시정조치)** 군수는 사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표시 및 광고 실태의 조사)** ① 군수는 소비자가 표시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표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광고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광고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계량 및 규격 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소비자 피해의 구제

**제14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평창군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피해구제의 처리)**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

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험, 검사 의뢰)** 군수는 소비가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피해구제 처리기한)**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을 받는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 등의 상담 처리상황 및 결과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군수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 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9조(소비자피해의 조정)**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사항 처리 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 소비자 중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의 협조)**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사례의 공표)** 군수는 소비자 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

려 피해의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사례  
집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  
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

- 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8조(위해의 방지)** ①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의 기준)** ①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6. 물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②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의 기준)**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도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 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

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 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비용 미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및 제2호

##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연락처	(033) 330 - 2540